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6
----------	-----

제출년월일 : '98. 12.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새롭게 하여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지원 인력의 확보 및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명칭을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21세기안산발전 위원회"로 변경(안 제1조)
-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안 제5조)
- 분과위원회를 8개 소위원회로 개편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함(안 제7조)
 - 행정개혁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방재정소위원회, 사회복지 소위원회,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 여성복지소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안 제10조)
- 조례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함(부 칙)

개정 조례안 — 덧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 수반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 50,000원×50명×6회 = 15,000천 원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21세기를 대비한 안산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책방향을 수립하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행정행태·관행·제도의 개선등 행정 쇄신에 관한 사항과 주민고충의 해결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의 조사·연구와 심의·처리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산시의 21세기 미래 종합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기시책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안산시의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 완화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내부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전문직업인, 사회단체의 임원,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개혁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방재정소위원회, 사회복지소위원회,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 여성복지소위원회를 두되 각소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소위원회는 5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되, 소위원회별 구성과 소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계획의 협의 및 조정과 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제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제9조(고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시정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0조(연구보조원) ①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보조원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발표회등)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각 소위원회의 연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 관계공무원을 행정지원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전항의 소위원회별 행정지원요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사항등 공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또는 당해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발표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치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21세기를 대비한 안산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책방향을 수립하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행정행태·관행·제도의 개선 등 행정쇄신에 관한사항과 민원고충의 해결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제2조(기능)</u>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조사와 심의·처리하는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장기시책 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u>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u>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 행위·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u>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p><u>제1조(목적)</u> <u>주민고충의 해결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u> 1. (현행과 같음) 2. <u>장기시책 예측</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 8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6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u>부위원장은 3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u></p> <p>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u>시의회의원, 전문직업인, 공무원</u> 중에서 <u>시장이 위촉한다.</u> 단, <u>시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u></p>	<p>제3조(구성) ①..... <u>50인</u></p> <p>②....., <u>부위원장은 1인으로</u> <u>하여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전문직업인, 사회단체의 임원, 시민</u> 중에서 <u>시장이 위촉한다.</u></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u>부위원장 중에서 장기발전연구 소위원장, 행정쇄신자문 소위원장, 민원고충처리 소위원장</u>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u>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신설)</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u>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u>연2회</u>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생략)</p>	<p>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연1회</u></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장기발전연구 소위원회, 행정쇄신자문 소위원회, 민원고충처리 소위원회를 둔다.</p>	<p>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개혁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방재정소위원회, 사회복지소위원회,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 여성복지소위원회를 두되 각소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p>

연 명	개 정 안
<p>② 소위원회는 독자적 기능을 갖고 활동하며, 구성은 본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신설)</p>	<p>② 소위원회는 5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제7조(장기발전연구 소위원회) <u>연구 소위원회(이하 본조에서는 “소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자문에 응하며 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조정·점검한다.</u></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소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p> <p>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분기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소위원회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작성되고 본 소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겨우 전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체할 수 있다.</p>	<p>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되, 소위원회별 구성과 소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현행 제7조 삭제)</p>

제8조(행정쇄신자문 소위원회)	장 인
<p><u>① 행정쇄신자문 소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한다.</u></p> <p><u>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④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u></p> <p><u>⑤ 소위원회는 제1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움, 기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다.</u></p> <p><u>⑥ 소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u></p>	<p><u>(현행 제8조 삭제)</u></p>
<p><u>(신설)</u></p>	<p><u>제8조(운영위원회)</u>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의 협의 및 조정과 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제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p>

민원 행정	개정안
<u>제9조(민원고충처리 소위원회)</u> ① 민원고충처리 소위원회(이하 본조에서는 "소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본 조례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권고한다.	(현행 제9조 삭제)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충민원의 신청은 누구든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필요한 사항	
⑤ 소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개시한 이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별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신청인이 당해 고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3. 당해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만, 위원회가 조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행정안
<p>4.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p> <p>5. 기타 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⑥ 소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처분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나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소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때에는 고충민원의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⑧ 소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설명)</p>	<p>제9조(고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시정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들 수 있다.</p>

연 행 제	내 용 안
<p><u>제10조(간사)</u> ① 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제6조의 소위원회에 각각 간사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p> <p>(신설)</p>	<p><u>(현행 제10조 삭제)</u></p>
<p><u>제11조(발표회 등)</u> (생략)</p>	<p><u>제10조(연구보조원)</u> ① 위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 보조원을 둘 수 있다.</p> <p>② 연구보조원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1조(발표회 등)</u> (현행과 같음)</p>
<p><u>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u>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특정 과제에 관한 연구의뢰 또는 공동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p>	<p><u>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u>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각 소위원회의 연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 관계공무원을 행정지원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전항의 소위원회별 행정지원요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위원회의 결정사항등 공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p> <p>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발표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위원회의 결정사항등 공표)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p> <p>제14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발표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치 아니한다.</p>
<p>제15조(운영규칙) (생략)</p> <p>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15조(운영규칙)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③(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26
----------	-----

제안년월일 : 1998. 12. 22.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외 6인

1. 수 정 이 유

- 소위원회가 축소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축소 조정하고 소위원회중 내용의 중복이 예견되는 소위원회를 통합하며
-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등 일부 조항이 타당하지 않아 수정

2. 주 요 골 자

- 안 제3조(구성) 1항중 “50인”을 “42인”으로 수정하고
- 안 제7조(소위원회) 1항중 “사회복지소위원회,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 여성복지소위원회”를 “사회여성복지소위원회,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예술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로 수정하며
- 안 제8조(운영위원회) 2항중 “위원장 및 시장이”를 “위원장 및 위원중 시장이”로 수정하고
- 부칙 제3항(존속기한)을 삭제키로 함.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50인”을 “42인”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사회복지소위원회,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 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 여성복지소위원회”를 “사회여성복 지소위원회,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예술소위원회, 도시건 설소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시장이”를 “위원장 및 위원 중 시장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내지 제15조”를 “제13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2항중 “설립”을 “구성”으로 하고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생략)</p>	<p>제3조(구성)..... 42인</p> <p>.....</p> <p>②~③(원안과 같음)</p>
<p>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개혁소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 지방재정소위원회, <u>사회복지소위원회</u>, 환경보전소위원회, 교육문화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 여성복지소위원회를 두되 각소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p>	<p>제7조(소위원회)..... <u>사회여성복지소위원회</u>, <u>환경보전소위원회</u>, <u>교육문화예술소위원회</u>, <u>도시건설소위원회</u>.</p>
<p>제8조(운영위원회)</p> <p>①(생략)</p> <p>②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제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p>	<p>제8조(운영위원회)</p> <p>①(원안과 같음)</p> <p>②..... <u>위원장 및 위원중 시장이</u>....</p>
<p>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p> <p>①(생략)</p> <p>②시장은 각 소위원회의 연구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 관계공무원을 행정지원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p> <p>①(원안과 같음)</p> <p>②..... <u>임명</u>.....</p>

원 안	수 정 안
<u>제1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등 공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또는 당해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u>	<u>제13조 <삭제></u>
<u>제14조 (생략)</u>	<u>제13조 (제14조 원안과 같음)</u>
<u>제15조 (생략)</u>	<u>제14조 (제15조 원안과 같음)</u>
<p>부칙</p> <p>①(생략)</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③(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2년 6월 30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부칙</p> <p>①(원안과 같음)</p> <p>②(경과조치) 구성</p> <p>③ <삭제></p>